

# 전세버스 차고 관련 규제철폐 요청

## I. 전세버스 현황

전세버스업은 전국적으로 1,592개사, 40,759대(서울 84개사, 2,446대)의 차량으로 국민 교통 편의증진 요구에 이바지하고 있음.(2025년 4월 기준)

### ■ 서울전세버스 등록대수 현황 <표1>

지 역	등록형태		현 재 (2025. 4월)		비 고
	업 체 수	차량대수	대 형	중 형	
서 울	84 개사	2,446대	1,956	490	

### 가. 전세버스운행 형태

-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일반전세와 산학관련업무로 분류되어 공공성과 대중성을 겸한 운송 형태를 취하고 있음.
    1. 일반전세 : 국가행사(올림픽·아시안게임, 국제회의)와 내·외국인 관광과 일반인 수송
    2. 산학관련(통근·통학업무) : 공무원, 산업체근로자, 공기업의 직원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·현장학습을 담당
  - 운송계약에 따라 요금과 운행계통을 정하여 특정 다수인을 수송하며 계절·시간적 변동요인으로 수입 편차 큼.
- ⇒ 전세버스는 고객의 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타운송수단 대비 저렴한 운송수단임.
- \* 정해진 노선과 운임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나 철도와 달리 전세버스는 기·종착지와 운임을 사용자 요구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 운행.

### ■ 전세버스 운행형태별 비율 <표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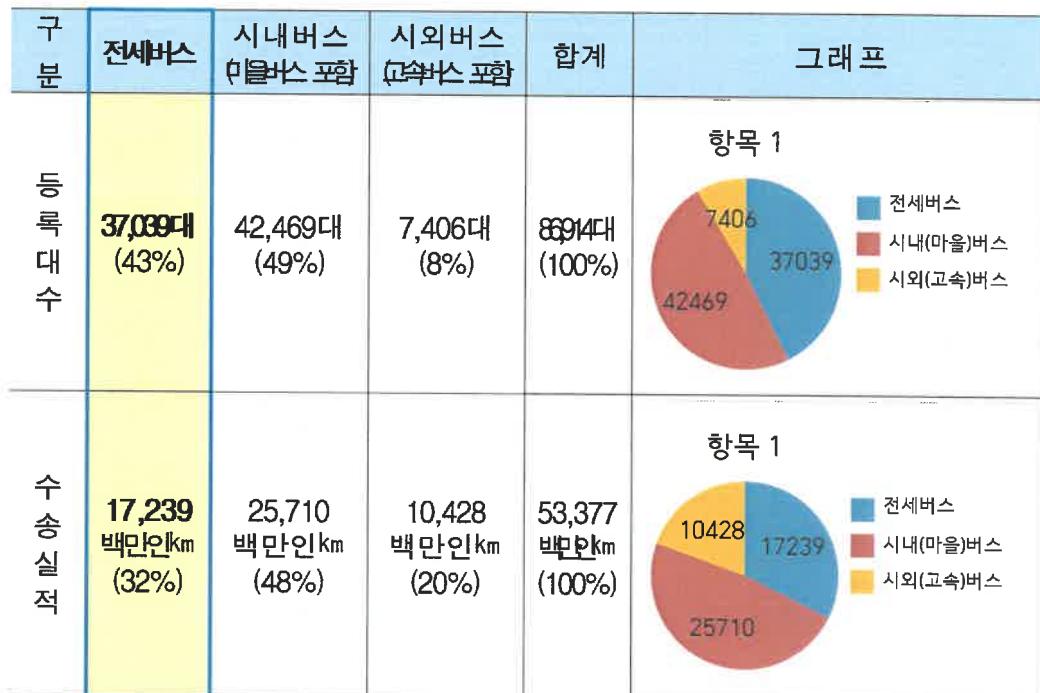
(2023. 12월 말 현재)

구분	통근	통학	학생단체 산업시찰	국내외 관광객수송	관혼상제 기타	계
91개사	752	638	326	548	108	2,372

## 나. 전세버스수송실태

- 전세버스 수송 수요는 성·비수기로 구분되며 여객의 이동에 따라 요일·월별, 계절별, 경기변동 등 사회·경제적 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.
- 기존 관광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통근·통학 등 승객의 교통편의가 강조된 공공성 있는 선택적 교통수단으로서 역할 수행 (통근·통학 운행비율 전체운행의 약 56%, 23년말 현재)

### ■ 버스운송사업 별 수송인원 비교 <표3>



\* 근거 - 등록대수 :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운수업조사(2022년), 수송실적 :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서 (2021년)

- 전세버스는 차량등록대수 기준으로 전체 버스운송사업의 4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수송인원 실적(인km)은 전체의 32%를 점유(‘18년 기준)
- 매출액은 1개 업체당 약 20억원(시외버스 대비 10%), 차량 1대당 0.8억원(시외버스 대비 42%)으로 다른 버스업종 대비 매우 낮은 수준(‘22년 기준)

## II. 전세버스 실태 및 문제점

### 가. 전세버스 차고 부족 및 운영비용 가중

-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서울시내에 업체당 수십대 면적의 차고를 확보한다는 것은 업계 영세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함.

- 기존 임대차고지(주차장)의 임대료 폭등, 선납금요구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#### 나. 기존 이용차고지 축소

- 대다수 전세버스 업체들이 등록 당시부터 차고지로 이용해 오던 주차장들을 각종 도시 개발(예: 탄천주차장 등)로 더 이상 차고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됨.
- 차고지가 부족 상황에서 타·시도차량의 불법 상주영업 증가로 세수로 조성된 일부 기초단체(구청) 주차장의 관리 소홀로 단속은커녕 오히려 장기계약을 허용하는 불법요소가 용인되고 있음.

#### 다. 등록기준 충족기 위해 차고지 편법운영 원인제공

- 서울 전세버스업체 96%이상이 차고지를 임대사용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거시설과 인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각종 민원 발생소지와 야간 도로상 불법 주정차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내재되어 있음.
- 연계도로와의 접근성과 이동거리 증가로 불필요한 연료소모는 국가적 손실과 운송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이용시민 부담 가중.

### III. 건의사항

- 서울시내에 입지한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폐손되어 지정 목적을 상실한 임야 등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전세버스 주차장으로 허용
  - 반복적으로 차고에 입·출차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새벽 출차 후 야간에 차고로 복귀하거나 장거리 숙박 운행이 빈번하므로 실제 이용률은 5~60%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의 현실과 상이한 관련규제의 완화 적용을 당부드리며, 여의치 않을 경우 야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함.
- 기존 탄천주차장 및 자체 개발중단부지 활용방안 강구
  - 前탄천주차장 폐쇄 이후 상당기간 경과되었음에도 공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한시적으로나마 주차장으로 재사용하도록 협의해 달라는 민원 쇄도로 검토를 요청.
  - 전세버스차고 조성 부지가 기초단체의 원론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규제완화 요청.

-끝-